

당첨자 자격확인 구비 서류 [노부모부양 특별공급]

이안 더 메트로

□ 자격확인 기간 : 2021.08.11(수) ~ 08.17(화) [7일간, 10:00 ~ 16:00]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확인
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○		주민등록증	본인	*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*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원 전입일 및 변동일,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요망)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*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·변동일 및 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*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*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	<input type="checkbox"/>
			피부양 직계비속	*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만 30세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*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피부양 직계존속	*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*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손자녀	*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*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			직계비속	*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 여부 확인 ※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7.20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*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노부모 특공 접수 불가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7.20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비속	*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7.20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	○	복무확인서	본인	*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_기타지역 접수자	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아래 일체 서류는 반드시 모집공고일(2021.07.20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

필수 구비서류입니다.